

# 장학금 지급 규정

신설 2010.07.07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성공회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설립정신에 입각하여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교의 학부 정규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장학생 선발기준과 장학금 지급의 절차와 시행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기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7.11.22.>

## 제 2 장 장학위원회

제3조(목적) 장학생 선발과 지급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5.02.23.><개정 2017.11.22.>

제4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신설 2015.02.23.><개정 2016.04.20.>

1. 위원회의 위원은 각 부처의 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7.11.22.>
2. 총장은 위원장의 추천을 통하여 당연직 위원 외 약간 명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생복지처장으로 하며, 간사는 장학담당자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5.02.23.>

1. 장학금에 관한 기본정책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지급기준 및 배정원칙에 관한 사항
3. 장학금지급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학금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5.02.23.>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5.02.23.>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02.23.>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02.23.>

제8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02.23.>

## 제 3 장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제9조(교내장학금의 종류) ① 교내장학금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2.23., 2015.10.28., 2016.04.20., 2019.08.28.>

1. 학비감면장학금 : 입학, 성적, 추천, 복지, 특별, 교류 등 학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등록금 범위

내에서 학비를 감면해 주는 장학금

2. 대가성장학금 : 기여, 근로, 포상 등 학업과 연관성 있는 활동에 대해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장학금

3. 생활보조장학금 : 경제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학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는 생활비 지원 장학금

② <개정 2015.10.28.><삭제 2016.04.20.>

③ <개정 2015.10.28.><삭제 2016.04.20.>

#### 제 4 장 장학금의 신청, 선발 및 지급

제10조(장학금 지급요강) 학생복지처장은 장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 학기 장학금 지급기준을 작성하여 장학 공지사항에 게시하도록 한다. 학과(부)장/지도(주임)교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02.23.><개정 2016.04.20.><개정 2022.01.19.>

1. 선발기준
2. 장학금 지급액
3. 기타 필요한 자료

제11조(교내장학금 신청기간) ① 학생복지처장은 장학금 신청 홍보를 위하여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최소한 신청기간 10일 전부터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23.>

② 장학금 신청기간은 매 학기가 종료되기 전으로 하며 7일 이상으로 한다.

제12조(교내장학금 신청) ①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학생복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02.23.><개정 2016.04.20.>

제13조(교내장학금 추천 및 방법) ① 각 학부장, 전공주임 및 지도교수는 장학금 수혜대상자를 학생복지처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5.02.23., 2016.04.20.><개정 2022.01.19.>

② <삭제 2016.04.20.>

제14조(교외장학금 관리) 교외 장학단체 또는 개인이 장학생의 추천을 의뢰하였거나, 장학금을 기탁하여 왔을 경우에는 추천의뢰자의 제시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 학생복지처장이 장학생을 추천하거나 선정한다. <개정 2015.02.23.>

1. 교외기관이 장학생 선발·추천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계 곤란, 성적 우수 등 선발·추천 기준을 포함한 본교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6.04.20., 2020.05.20.>

2. 교외기관이 장학생 선발·추천 기준을 정하였을 경우 선발·추천기준을 충족한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그 기준이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불법·부당하거나 특정인을 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에는 기준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필요시 기준을 재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05.20.>

2의 1. 교외기관이 특정학생을 지정하여 선발·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① 교외기관의 선발·추천 기준, 방법 및 절차가 명시된 자료 ② 교외기관과 특정학생 간 이해관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교외기관으로부터 제출받고, 지정한 특정학생이 대학의 장학생 선발·추천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지 여부,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관련자료를 재요청하거나, 선발·추천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20.05.20.>

3. 학과에 직접 기탁되었을 경우에는 학과(부)장/지도(주임)교수는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20.>

4.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하는 국가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5. 학과에 직접 기탁된 기부장학금의 경우 해당학과는 별도의 내규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12.21>

제15조(장학금 지급기준) ① 학생복지처장은 신청대상자, 각 학부장, 전공주임 및 지도교수로부터 신청, 추천된 장학금 수혜대상자에 대하여 자격여부, 성적 및 기타 결격사유를 검토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15.02.23.> <개정 2016.04.20.> <개정 2022.01.19.>

② 학사경고자는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추천장학금, 복지장학금, 해외교육장학금, 대가성 및 생활보조 장학금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04.20.>

③ 장학금 종류별로 장학금 수혜를 위한 평균평점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단, 신입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직전학기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나, 교내 특별(교직원 가족, 대한성공회가족)장학금은 재입학시 직전학기 성적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16.04.20.> <개정 2022.01.19.>

④ 장학금은 수업연한 8학기 내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추천장학금, 복지장학금, 해외교육장학금, 대가성 및 생활보조 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04.20.>

⑤ 학비감면장학금은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4학년 예외)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추천장학금, 복지장학금, 해외교육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04.20.> <개정 2016.08.24.>

⑥ 장학금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신설 2016.04.20.>

⑦ 학생복지처장은 장학생으로 확정된 이후라도 다음과 같이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할 명백하고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취소하고 지급된 장학금은 반환받을 수 있다. <개정 2015.02.23.> <개정 2016.08.24.> <개정 2022.01.19.>

1. 학사경고자인 경우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1.5미만)
2. 등록하지 않은 경우
3. <삭제 2016.04.20.>
4. 본인이 포기한 경우
5. 등록금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 2016.04.20.>
6. 기타 부득이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6.04.20.>
7. 휴학, 제적한 경우(단, 등록한 학기에 휴학한 경우는 해당학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08.24.> <개정 2022.01.19.>

⑧ 학비감면장학금은 교외장학금을 우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6.12.21.>

제16조(장학금 통보) 학생복지처장은 확정된 장학금 수혜대상자 명부에 의하여 매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액과 종류, 수혜대상자임을 명시하여 통보한다. <개정 2015.02.23., 2016.04.20.>

제17조(장학증서) 학생복지처장은 해당학기의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5.02.23.>

1. 해당학기 성적장학금 대상학생이 장학금을 양보하는 경우, 명예장학생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2.01.19.>

제18조(장학금 지급) ① 학비감면장학금은 당해 학기 등록금 납부 시에 차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등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15.02.23.> <개정 2016.04.20.> <개정 2022.01.19.>

② 대가성 및 생활보조장학금은 학생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01.19.>

제19조(장학금 총액) 학생 1인당 학비감면장학금의 총액은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02.23., 2015.09.23.,

2016.04.20.>

- 1. 근로장학금
- 2. 공공기관 및 교외장학재단 등의 해당기관에서 인정하는 생활비 보조 등의 대가성 장학금
- 3. 등록금과 무관한 멘토링비,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훈련비, 기숙사비, 기여 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비
- 4.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제20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장학위원회가 심의하고 총장이 승인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종전의 장학금지급규정과 장학금지급내규를 폐지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8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별표 1의 1호 내지 5호를 일부 개정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23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별표 1의 7호를 일부 개정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 ② (단서조항) 입학 장학금의 변경은 201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기로 하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8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28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23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23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8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27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20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② (단서조항) 제15조 5항의 경우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8월 24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② (단서조항) 제15조 5항의 경우 2016학년도 1학기 이전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자를 선발할 수 있다. 단, 성적장학금 선발은 2016학년도 2학기까지 15학점(4학년예외)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15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6월 2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7월 27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2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22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22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28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18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② (단서조항) [별표 1] 학비감면장학금 지급기준 2. 성적장학금은 2020년 3월 2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20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19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23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24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26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6월 30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9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② (단서조항) [별표 1] 학비감면장학금 지급기준 2. 성적장학금은 2022년 3월 0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25일부터 변경 시행한다.

[별표 1] 학비감면장학금 지급 기준

1. 입학 장학금

장학금 명칭	수혜금액	지급 기준	수혜 기간	직전학기 이수학점	직전학기 평균평점	신청서
입학전체 수석	입학금 및 수업료 범위 내	①해당학년도 입학홍보처의 입학장학금 계획에 따라 지급한다. ②입학전체수석장학금의 최초 수혜대상자가 입학할 포기하는 경우 차점자에게 입학전체우수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직전학기 이수학점, 평균평점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수혜는 불가하고, 누적2회 이상 성적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계속장학생에서 제외한다. ④제적의 경우 계속장학생 자격은 소멸된다.	1~8학기	12학점 이상	3.0 이상	해당 없음
입학전체 우수			1~4학기			
학생부종합 학부 수석	입학금 및 수업료 범위 내	①해당학년도 입학홍보처의 입학장학금 계획에 따라 지급한다. ②최초 수혜대상자가 입학할 포기하는 경우 차점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학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학생부교과 학부 수석						
수시학부 최우수						
수시학부 우수						
정시학부 수석						
정시학부 차석						
입학추천	입학금 및 수업료 범위 내	입학홍보처장이 특별한 사유(가계곤란 등)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학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개정 2016.01.27., 2016.04.20.><전면개정 2017.07.27.> <개정 2022.01.19.>

2. 성적 장학금

장학금 명칭	수혜금액	지급 기준	수혜 기간	직전학기 이수학점	직전학기 평균평점	신청서
성적수석	수업료의 100%	①재학생수를 반영하여 각 학년별 성적우수자를 선발한다. ②삭제 ③미취득학점(F.N)이 있는 학생은 선발에서 제외한다. (단, 0학점 교과목은 예외로 한다) ④평균평점이 동일한 경우 신청학점 많은 자, 신청과목이 많은 자, P급제과목 학습수가 적은 자 순으로 선발한다. ⑤학년별 순위 결정시 최종성적 취득학년을 기준으로 한다. ⑥타대학 및 해외에서 취득한 성적은 성적장학금 선발 기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	12학점 이상	1.5 이상	해당 없음
성적우수	수업료의 30%					
성적향상	수업료의 30%	①재학생수를 반영하여 각 학년별 전전학기(전전학기 P급제 과목만 취득한 경우 그 이전학기) 대비 직전학기 성적향상 폭이 큰 자를 선발한다. (단, 1.0미만 향상 자는 제외한다) ②삭제	-	12학점 이상	1.5 이상	해당 없음

		③미취득학점(F,N)이 있는 학생은 선발에서 제외한다. (단, 0학점 교과목은 예외로 한다.) ④평균평점이 동일한 경우 신청학점 많은 자, 신청과목이 많은 자, P급제 과목 학점수가 적은 자 순으로 선발한다. ⑤학년별 순위 결정시 최종성적 취득학년을 기준으로 한다. ⑥타대학 및 해외에서 취득한 성적은 성적장학금 선발 기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외교육 성적우수	수업료의 50% 이하	①해외교육 프로그램(인도창, 중국창, 필리핀 해외교육 프로그램 등) 참여자 중 성적우수자를 선발할 수 있다.	-	12학점 이상	1.5 이상	해당 없음

-입학 최우수장학금, 입학 우수장학금, 입학 추천장학금 설치

<개정 2014.04.16., 2014.06.18., 2015.02.23., 2015.10.01., 2015.10.28., 2016.01.27., 2016.04.20., 2016.08.24., 2016.12.21., 2019.01.22., 2021.05.26.><전면개정 2020.03.02., 2021.02.24. 2022.01.19>

3. 추천 장학금

장학금 명칭	수혜금액	지급 기준	수혜 기간	직전학기 이수학점	직전학기 평균평점	신청서
특별추천	등록금 범위 내	총장, 학생복지처장이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	12학점 이상	1.5 이상	해당 없음

학과(부)장 추천장학금 <삭제 2016.01.27.>

<개정 2016.04.20., 2019.01.22.>

4. 복지 장학금

장학금 명칭	수혜금액	지급 기준	수혜 기간	직전학기 이수학점	직전학기 평균평점	신청서
열림	수업료 범위 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생 중에 선발하여 지급한다.	-	12학점 이상	1.5 이상	제출
나눔	수업료 범위 내	경제사정이 곤란한 장애학생 본인 또는 부.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선발하여 지급한다.	-	12학점 이상	1.5 이상	제출
섬김	수업료 범위 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국가 장학금 소득 1~8구간(분위) 확정 학생 중에 선발하여 지급한다.	-	12학점 이상	1.5 이상	제출
희망	수업료 범위 내	기타 경제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증빙자료(신청서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를 검토하여 지급한다.	-	12학점 이상	1.5 이상	제출
특별 (코로나19) <신설 2020.08.19.>	수업료 범위 내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부담 완화 및 학업 장려를 위해 재학생 중에 선발하여 지급한다.	-	-	-	해당 없음

<개정 2010.12.08., 2016.04.20., 2016.08.24., 2016.12.21.>

<전면개정 2017.07.27.><개정 2017.11.22., 2019.08.28., 2020.08.19., 2022.05.25>

5. 특별 장학금

장학금 명칭	수혜금액	지급 기준	수혜 기간	직전학기 이수학점	직전학기 평균평점	신청서
교직원 가족	입학금 및 수업료 범위 내	① 재직 중인 교직원 및 대한성공회 성직자의 직계자녀는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성적이 3.0 미만(1.5이상)인 경우 수업료의 50%를 지급한다. ② 재직 중인 교직원 및 대한성공회 성직자 본인과 배우자는 수업료의 50%, 성적이 3.0 미만(1.5이상)인 경우 수업료의 20%를 지급한다. ③ ①,②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한다.<신설 2016.12.21.> ④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6.12.21.> ⑤ 재입학 시에도 직전학기 성적을 반영하여 수업료를 지급하고, 입학금은 지급하지 않는다.<신설 2017.11.22.>	8학기	12학점 이상	1.5 이상	제출
대한성공회 성직자가족						
대한성공회 수도자	수업료의 70%	① 직전학기 성적이 3.0이상인 경우 수업료의 70%, 성적이 3.0 미만(1.5이상)인 경우 수업료의 30%를 지급한다.	8학기	12학점 이상	1.5 이상	제출
가족	500,000원	① 본교에 형제자매, 부부, 부모자녀가 2인 이상 재학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	12학점 이상	1.5 이상	제출
국가유공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①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자녀로 소정의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지급한다. ② 국가보훈처의 선발 기준을 따른다.	8학기	-	-	제출
5.18유공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① 5.18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자녀로 소정의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에게 지급한다. ② 국가보훈처의 선발 기준을 따른다.	8학기	-	-	제출

<개정 2016.04.20., 2016.12.21., 2017.11.22.>

6. 교류장학금

장학금 명칭	수혜금액	지급 기준	수혜 기간	직전학기 이수학점	직전학기 평균평점	신청서
외국인유학생	수업료 범위 내	①외국인 특별전형 합격자(정원외)중에서 성적이 2.0 이상인 경우 차등 지급한다. (직전학기 3.5 이상 70%, 2.5이상 50%, 2.0이상 30%, 2.0미만 감면 없음) ②본교 한국어학당에서 두 학기 이상 수학 후 입학한 외국인 학생은 입학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③첫 학기의 경우 해당학년도 입학홍보처의 입학(외국인)장학금 계획에 따라 지급한다.	-	12학점 이상	2.0 이상	제출
해외교육	수업료의 50%이하	해외교육과정(인도창, 중국창, 필리핀창)에 선발된 학생 및 자비 파견교환유학생에게 지급한다.	-	해당없음	해당없음	제출

해외교육 추천 장학금 <삭제 2010.12.08.>

<개정 2016.04.20., 2016.08.24., 2017.11.22.>

## [별표 2] 대가성 및 생활보조 장학금 지급 기준

## 1. 기여 장학금

장학금 명칭	수혜금액	지급 기준
학생임원	별도 정함	총학생회장, 총학생회부회장, 총학생회집행부, 동아리연합회장, 동아리연합회부회장, 동아리연합회집행부, 미디어센터장, 미디어센터국원, 인권위원회위원장, 인권위원회위원, 학부학생회장, 학부학생회 부회장, 학부학생회 집행부
특별공로	별도 정함	대학 발전에 기여한 학생
실습지원TA <신설 2021.02.24.>	별도 정함	IT융합자율학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의 실습지원과 전공교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학부에서 지정한 학생에게 지급한다.

학생공로 장학금, 미디어센터장학금 <삭제 2015.10.28.>

학생임원장학금D <삭제 2016.01.27.>

<개정 2016.01.27., 2016.04.20.><전면개정 2017.06.21.><개정 2018.08.22., 2020.05.20., 2021.02.24. 2022.01.19>

## 2. 근로장학금

장학금 명칭	수혜금액	지급 기준
인턴근로	별도 정함	본교 인턴근로장학제도 운영규정에 따른다.
국가근로	별도 정함	본교 국가근로장학제도 운영규정에 따른다.
교육조교	별도 정함	본교 조교임용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
학교행사도우미 <신설 2016.01.27.>	별도 정함	학교행사에 도우미로 참여한 학생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6.04.20., 2016.08.24., 2018.08.22., 2020.08.19., 2020.09.23.>

인턴십<삭제 2017.11.22.>, 학생홍보대사<삭제 2021.02.24.>, 선배멘토<삭제 2021.05.26.>

## 3. 포상장학금

장학금 명칭	수혜금액	지급 기준
글로벌스터디투어 <신설 2013.10.23.> <개정 2017.06.21.>	별도 정함	본교 글로벌스터디투어 프로그램에 선발된 자
로컬스터디투어 <신설 2017.06.21.>	별도 정함	본교 로컬스터디투어 프로그램에 선발된 자
취업지원 <신설 2015.10.28.>	별도 정함	진로탐색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우수 참여학생 등 취업을 위한 활동이 우수한 자를 격려하기 위한 장학금

<개정 2019.09.18.>		
창업지원 <신설 2015.10.28.> <개정 2019.09.18.>	별도 정함	창업지원 프로그램 우수 참여학생 및 (예비)창업자의 적극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
학습지원 <신설 2015.10.28.> <개정 2019.09.18.>	별도 정함	학습역량 증진 및 자기주도적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
경진대회 <신설 2015.10.28>	별도 정함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진대회 또는 대외 경진대회 수상자에게 지급
사회봉사 <신설 2015.10.28> <개정 2019.09.18.>	별도 정함	사회봉사 우수학생(시간, 수기 등) 및 본교 해외봉사(참가비의 30% 내외)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
어학우수 <신설 2015.10.28>	별도 정함	공인어학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취득한 학생에게 지급
심리상담지원 <신설 2019.08.28.> <개정 2021.06.30.>	별도 정함	학생상담센터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활동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스쿰(SKHU Mileage) <신설 2020.09.23.>	별도 정함	비교과프로그램 이수로 마일리지를 적립한 학생 가운데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
홍보 <신설 2021.02.24.>	별도 정함	입학홍보처가 주관하는 학교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를 격려하기 위해 장학금 지급
멘토링 <신설 2021.05.26.>	별도 정함	융합자율학부 또는 전공에서 진행하는 멘토링에 참여한 학생에게 지급

학생에코실천단 장학금 <삭제 2016.04.20.>

건강증진 장학금 <삭제 2019.08.28>

#### 4. 대학특성화장학금

장학금 명칭	수혜금액	지급 기준
학부 및 전공 특성화 <신설 2017.02.15>	별도 정함	대학과 학부 및 전공의 교육목표와 인재상에 따라 선발한 학생에게 지급
대학혁신지원사업 장학금 <신설 2019.11.20>	별도 정함	대학혁신지원사업 혁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별도의 선발절차를 통해 선발된 자
사학혁신지원사업 장학금 <신설 2022.01.19>	별도 정함	사학혁신지원사업 과제수행의 일환으로 별도의 선발절차를 통해 선발된 자

<개정 2019.11.20. , 2022.01.19>

#### 5. 생활보조장학금

장학금 명칭	수혜금액	지급 기준
더불어	별도 정함	복지장학금 지급대상자, 기타 경제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교외학업장려대응	별도 정함	한국장학재단, 서울장학재단 등 교외 학업장려장학금 수혜학

장학금		생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기숙사비지원장학금	별도 정함	장애가 있는 자 또는 저소득계층에게 기숙사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특별지원 <개정 2020.05.20.>	별도 정함	아래 ① ② 중 해당하는 학생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재난, 재해 등의 피해로 인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② 그 외 장학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15.10.28., 2016.01.27., 2016.04.20., 2016.08.24.>

<전면개정 2017.11.22.><개정 2019.01.22., 2020.05.20., 2020.08.19.>

파견교환유학생 <삭제 2022.01.19.>